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17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」 일부개정

- 통장 17명 증원 : 625개 통·리장(통장 453, 리장 172)

⇒ 642개 통·리장(통장 470, 리장 172)

- 도량동2, 선주원남동3, 비산동2, 상모사곡동3, 임오동1, 양포동6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도량동 38통란부터 39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8	1	38통 구역일원
39	1	39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선주원남동 51통란부터 53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1	1	51통 구역일원
52	1	52통 구역일원
53	1	53통 구역일원

별표 중 비산동 7통란부터 8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	1	7통 구역일원
8	1	8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상모사곡동 33통란부터 35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	1	33통 구역일원
34	1	34통 구역일원
35	1	35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임오동 27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7	1	27통 구역일원
----	---	----------

별표 중 양포동 48통란부터 53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8	1	48통 구역일원
49	1	49통 구역일원
50	1	50통 구역일원
51	1	51통 구역일원
52	1	52통 구역일원
53	1	53통 구역일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① 자치구가 아닌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9.4.1.]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1조(이장의 임명)

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 <개정 2010.11.2.>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조 석 희
	담 당	박 주 영
	담 당 자	김 준 섭 (480-6765)